

# 2012년 제4차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이용안내

□ 주관기관 : 신용보증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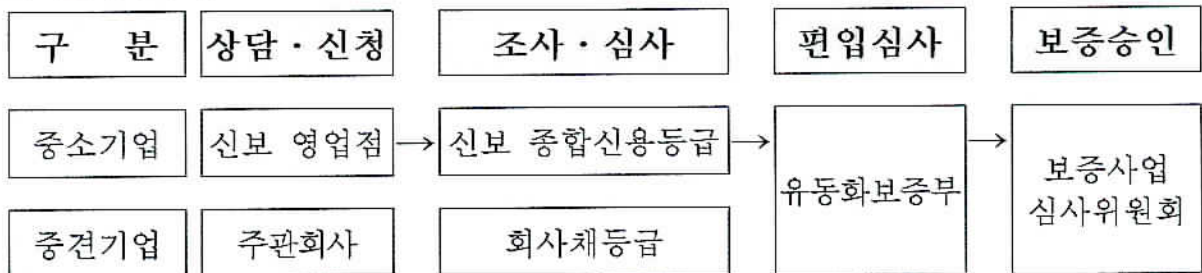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접수처 : 신용보증기금 각지점

□ 발행일정

- '12. 9. 14(금) ~ 9. 21(금) :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
- '12. 10. 4(목) : Pooling 확정
- '12. 10. 11(목) : 보증승인(보증사업심사위원회)
- '12. 10. 18(목) : 기초자산(회사채) 발행
- '12. 10. 19(금) : 건설사P-CBO 발행

※상기 모집규모 및 발행일정은 업무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절차
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문의 바람.

□ 지원대상

중 소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CPA감사보고서 有 : 신보 종합신용등급 <u>K10</u>이상</li> <li>■ CPA감사보고서 無 : 신보 종합신용등급 <u>K9</u>이상</li> </ul>
중 견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-이상</li> </ul>

□ 지원한도

회사채 신용등급 및 신용보증기금 자체등급에 따라,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 책정

\*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## □ 편입 제한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주력기업이 심사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- 보증금지·보증제한기업 및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
- 당기 CPA 감사의견이 “부적정” 또는 “의견거절”인 기업
- BB<sup>+</sup>(K6)등급 이하 기업으로 2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.0미만인 기업
-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(건설업은 450%)
-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기업가치가 “0”이하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은행연합회 건설업 상시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“C”, “D”등급 기업

## □ 매출액·자기자본·차입금 및 사채발행 한도

구 분	편입한도
매출액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조업,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3이내 또는 최근 4개월간 매출액 이내</li> <li>■ 기타업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4이내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이내</li> </ul>
자기자본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회사채등급 BB(K7)등급 이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</li> </ul>
차입금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이내</li> </ul>

\*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 + 보증재단보증 + 편입금액 +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

## □ 발행조건

- 만기 : 3년
- 발행금리 : 중소기업 4%(K1등급) ~ 5.8%(K10등급) 수준  
중견기업 5%(BBB<sup>+</sup>등급 이상) ~ 6%(BB<sup>-</sup>등급) 수준
- \*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시가평가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\* 준공후 미분양부동산 또는 여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설사의 경우 상기금리에서 최대 1.0%p 이내에서 금리 우대
- 후순위채 인수 : 건설사는 편입금액의 5%  
비건설사는 편입금액의 3% 수준 인수